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최근 판례 및 법 개정

백영화 연구위원

최근 대법원은 대형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위 ‘1mm 깨알 글씨’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고객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였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 해당 동의서상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에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고객의 인식가능성과 가독성이 높은 방식에 의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대형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 뒷면에 약 1mm 크기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음¹⁾
 - 해당 사건의 원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형마트 및 그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²⁾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하여 동의를 받음에 있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 사항³⁾이 응모권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 응모권에 기재된 약 1mm 크기의 글씨는 복권,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경품행사 응모자들이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응모함 옆에 응모권 확대 사진도 부착한 점
 -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223 판결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

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⁴⁾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또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⁵⁾
-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해당 사건의 경품행사를 위해 사용된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이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함
 - 아울러, 해당 사건의 광고를 통해 단순한 사은행사로 오인하고 경품행사에 응모하게 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봄
 -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⁶⁾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
- 이 밖에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음
 - 해당 경품행사의 기획 및 실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해당 경품행사의 목적은 처음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었음
 - 그럼에도 해당 경품행사의 광고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고, 이에 광고를 접한 고객들은 단순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
 -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경품행사가 단순한 사은행사인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인지 여부가 해당 경품행사에 응모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경품추첨과는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심지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하였음
 -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큼

4)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

5)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6)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1mm 깨알 글씨’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기는 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 정보주체의 인지가능성과 가독성이 높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형식적으로 전부 기재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정보주체가 해당 기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임
- 또한, 2017. 4. 1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 해당 동의서상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음⁷⁾
 - 기존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었음⁸⁾
 - 그러나 여기서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애매하다는 문제 제기하여, 동의서상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그 기재 방법과 형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임
 -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서를 받음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⁹⁾
 - 그에 따라 향후 행정자치부는 밑줄·괄호 등 기호, 색깔, 굵고 큰 글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할 예정임
- 이러한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최근 판례 및 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고객의 인식가능성과 가독성이 높은 방법에 의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kiri**

7) 2017. 10. 19.부터 시행

8)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9)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최초 발의된 법안에서는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공포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함